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26
----------	-----

2023년 6월 2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4월 27일, 유만희 의원 외 21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6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유만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발(足)은 신체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로서,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임.
-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맨발 걷기’ 및 ‘맨발 보행로’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2)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3)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4)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5)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바탕으로 시민의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맨발 걷기 보행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맨발 보행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시설물로 구분되어있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로 휴양시설 또는 운동시설(자연체험장)에 해당될 수 있어 공원 내 시설물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맨발 걷기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됨.
- 다만, 동 조례 제2조(정의)제2호에서 ‘맨발 보행로’는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로 명시돼 있으나, 이는 정형화 및 규격화된 시설물이 아니므로 ‘맨발 걷기에 적합’하다는 정량 및 정성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의 및 시설의 구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¹⁾된 상황으로 해당 의안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에 **운동시설**로서 ‘맨발걷기길’을 정의하는 것으로, 동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맨발 보행로 활성화 및 지원은 상위 법령에서 개정이 된다면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질 것으로 사료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 시설</u>	마. <u>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맨발걷기길 등 운동시설</u>
바. ~ 카. (생 략)	바. ~ 카.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한편, 공원관리부서는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물³⁾ 중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 및 전체 공원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개별시설물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때 특정 시설물의 설치에 해당 주관부서에서 담당⁴⁾하고 있음.

이는 효율적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현재 타 상임위원회 조례로 정하는 공원 내 시설물은 도로, 주차장, 골프장, 실외·실외 체육시설, 도서관, 체력단력시설, 수목장림 등이 있으므로 ‘맨발 걷기’의 주된 목적에 맞는 정책목표에 따라 소관 부서가 지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

1) 제21대 국회 제407회 회기,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2023.6.2.), 의안번호(22437)

2)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발의일자(2023.6.1.), 의안번호(22437)

3) 운동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편익시설 등

4) 일례로 공원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사항은 체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

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